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5호

2023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3년도 제1회·제2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_구분모집	직급	선발예정인원 (명)	시험과목		
총 계		24개 직렬(32개 직류)		1,012			
제1회 임용 시험	소 계		18개 직렬(26개 직류)		960		
	공개 경쟁	행정 직군	행정직(일반행정)	9급	36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행정직(일반행정)_장애인		33		
			행정직(일반행정)_저소득층		12		
			세무직(지방세)	9급	3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세무직(지방세)_장애인		3		
			세무직(지방세)_저소득층		1		
		전산직(전산)	9급	7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100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직(사회복지)_장애인		7			
		사회복지직(사회복지)_저소득층		4			
		사서직(사서)	9급	6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속기직(속기)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기술 직군	공업직(일반기계)	9급	30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일반기계)_장애인		3			
		공업직(일반전기)	9급	36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일반전기)_장애인		4			
		공업직(일반화학)	9급	2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공업직(일반화학)_장애인		2			
		녹지직(산림자원)	9급	1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지직(산림자원)_장애인		1			
		녹지직(조경)	9급	17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녹지직(조경)_장애인		2			
		보건직(보건)	9급	20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보건직(보건)_장애인		2					
식품위생직(식품위생)		9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간호직(간호)		8급	2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_구분모집	직급	선발예정 인원 (명)	시험과목	
		환경직(일반환경)	9급	7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직(일반토목)	9급	7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일반토목)_장애인		7		
		시설직(일반토목)_저소득층		2		
		시설직(건축)	9급	57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직(건축)_장애인		5		
		시설직(건축)_저소득층		1		
		시설직(지적)	9급	2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시설직(지적)_장애인		2		
		방재안전직(방재안전)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6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경력 경쟁	기술 직군	해양수산직(일반수산)	9급	2	필수(3) :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해양수산직(선박항해)		7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항해
			해양수산직(선박기관)		1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의료기술직(의료기술)_임상병리	9급	1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의료기술직(의료기술)_방사선	2			
		의료기술직(의료기술)_물리치료	2			
		의료기술직(의료기술)_치위생	2			
	지도직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	1	필수(3) : 재배학, 토양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직(원예)		1		필수(3) : 재배학, 토양학, 원예학		
제2회 임용 시험	소 계	9개 직렬(11개 직류)		37		
경력 경쟁	공개 경쟁	행정 직군	행정직(일반행정)	7급	7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기술 직군	수의직(수의)	7급	6
	약무직(약무)	7급		2	필수(3) : 화학개론, 약제학, 약리학	
	운전직(운전)	9급		6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기술계 고졸	공업직(일반기계)	9급	1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공업직(일반전기)	9급	2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보건직(보건)	9급	1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설직(일반토목)	9급	3	필수(3) : 물리, 토목일반, 측량	
		시설직(건축)	9급	3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연구직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1	필수(3) : 보건학, 역학, 식품화학	
		환경연구직(환경)_대기	연구사	3	필수(3) : 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관리	
		환경연구직(환경)_수질		2	필수(3) : 환경공학, 환경화학, 수질오염관리	
	기타	의무직	5급	15	※ 별도 시험계획 공고	

- ※ 근무예정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또는 16개 자치구·군(읍·면·동 행복복지센터 포함) 및 구·군 의회
 - ▶ 직렬(직류)별 결원 현황에 따라 본인 희망기관(임용후보자 등록 시 5개 선택) 이외의 기관에 배치될 수도 있음
- ※ 시험과목 중 **응용색 과목**은 '부산시 자체 출제(문제 비공개)', 그 외 과목은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문제 공개)'

나. 출제범위 등

- 1) (9급 기술계 고졸 경력경쟁) '물리'는 물리학 I, '생물'은 생명과학 I 에서 출제되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2) (7급 공개경쟁) '행정학'은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3)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은 해당 직렬(직류)와 동일한 시험과목입니다.

다. 공통 응시자격

1)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8·9급	18세 이상	2005. 12. 31. 이전 출생자
7급, 연구·지도사	20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 2024년도부터 7급, 연구·지도사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2) 거주지 제한 :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①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참고사항>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 증명

3) 응시결격사유 ▶ 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라. 직렬(직류)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 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_구분모집	직급	직렬(직류)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제1회 임용 시험	공개 경쟁	행정 직군	전산직(전산)	9급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사 1·2·3급
			사회복지직(사회복지)_장애인		
			사회복지직(사회복지)_저소득층		
			사서직(사서)	9급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직(속기)	9급	·한글속기 1·2·3급		
	기술 직군	간호직(간호)	8급	·조산사, 간호사	
		시설직(지적)	9급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시설직(지적)_장애인			
	경력 경쟁	기술 직군	해양수산직(일반수산)	9급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질병관리사
			해양수산직(선박항해)		
			해양수산직(선박기관)		
			의료기술직(의료기술)_임상병리사	9급	·임상병리사
		의료기술직(의료기술)_방사선	·방사선사		
		의료기술직(의료기술)_물리치료	·물리치료사		
의료기술직(의료기술)_치위생		·치과위생사			
지도직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으로서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농촌지도직(원예)				
제2회 임용 시험	경력 경쟁	기술 직군	수의직(수의)	7급	·수의사
			약무직(약무)	7급	·약사, 한약사
			운전직(운전)	9급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
	기술 고 졸	공업직(일반기계)	9급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직렬(직류)별 관련학과를 졸업(예정 포함)하고,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각급 대학 중퇴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졸업자는 졸업일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3.12.8.) 사이의 기간 1년 이내 *응시희망자는 2023.6.26.(월) ~ 6.30.(금)까지 해당 학교장 추천	
		공업직(일반전기)			
		보건직(보건)			
		시설직(일반토목)			
	연구직	시설직(건축)	연구사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해당 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보건연구직(공중보건)			
		환경연구직(환경)_대기			연구사
환경연구직(환경)_수질					

※ 2024년부터 '전산직렬'은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폐지되고,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전환됩니다.

- 1) 직렬(직류)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요건이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 2) 원서제출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도,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합니다.
- 3) 직렬(직류)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하며, 필기시험 합격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 자격(면허)증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4) 연구직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으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5) 지도직에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함)
- 6) 연구직·지도직 응시자는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관련 학 전공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관련 학위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 학위 취득>

- 대학(학부)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 계통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면 응시 가능
- '학위 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붙임6] 연구직·지도직 관련(계통) 학(학위) 증명서 및 학교장 추천서(서식) 확인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해당시험의 응시원서 제출마감일(2023. 3. 17.) 현재 기준

- 1) 대 상 자
 -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2)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제출은 할 수 없음]
-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해당시험의 응시원서 제출일(2023. 3. 13) 또는 제출마감일(3. 17) 현재 기준**

1) 대 상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제출일 또는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지원)이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유의사항>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급여(지원)이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4) 수급자(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비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제출은 할 수 없음]
- 5)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발급>

- 발급처 : 주민등록 주소지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 인정증명서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증명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 ※ 단,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발급담당자가 증명서에 수급기간(계시, 중단 이력 포함)을 명시하고, 담당자 직급·성명·확인(도장 또는 서명)·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문의 : 인사과 051-888-1972)

사. 기술계 고졸(예정자 포함)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대 상 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단,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2023. 12. 8.)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만 응시 가능]

- 2) 해당 학교장의 추천 시 추천대상자의 자격 기준(학력, 추천학과, 학과 성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학력 기준

-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로서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각급 대학 중퇴자
※ 각급 대학 중퇴 여부는 '추천서 제출마감일(2023. 6. 30.)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가능

○ 추천학과 기준

- 아래 표의 선발 직렬(직류)별 관련학과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선발 직렬(직류)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별표 2]의 '중 직무분야-관련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일 경우에는 추천 학교장의 확인이 필요함

직렬(직류)	관련학과
보건직(보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공업직(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업직(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시설직(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시설직(건축)	건축(건축설비)

○ 학과 성적 기준 ▶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 ②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참고사항>

-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 고등학교 전(全)학년 성적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 취득한 사람으로서 전(全)학년 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교에서 → 실업계 고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하여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 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3) 기술계 고졸 구분모집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6. 12. 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 4) 지역요건은 **학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거나 응시자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 5) 응시대상자는 **2023. 6. 26.(월)부터 6. 30.(금)까지**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는 원서제출 기간에 인터넷으로 반드시 응시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학교장 추천 시 성적·졸업 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대상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 운전직류 응시대상자 ▶ 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3. 12. 8.) 현재 기준

- 1) 대 상 자 :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2) 대형버스 규격
 - 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르며,
 - ②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에 ‘**대형승합**’이라고 기재된 차량만 해당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자동차의 종류>

- 대형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소형)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 (제외) 덤프트럭, 화물차, 렉카, 트레일러 등 대형승합이 아닌 차량

-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확인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경찰청발급) 운전경력증명서 1부
- [붙임5]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사업자등록업체 발행 대형버스 운전경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간이 포함되도록 발급
- ※ 위의 제출서류만으로 경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상세 안내 예정

-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는 **[붙임5] 서식으로 대형버스 운전 경력만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업체에서 발행한 자체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붙임5] 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하여야 함
- ※ 내용이 누락될 경우 경력 불인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식을 출력하여 발급**
- 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되므로, 군(軍)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불인정
- ‘서류전형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경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며, 불합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시험시간 :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 ▶ 시험시간 예시 : 3과목(10:00~11:00), 5과목(10:00~11:40)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1)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필기시험 합격에 따른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응시자격 요건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결정 등

- 1) 합격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정하며,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응시자격 요건 미충족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2)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공개경쟁**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7급 공개경쟁은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경력경쟁**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3)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4)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성적 확인 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함)

3 시험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제출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3. 13.(월) ~ 3. 17.(금) [취소일 : 3. 20.(월) 18:00까지]	필기시험	5. 19.(금)	6. 10.(토)	7. 11.(화)
		면접시험	7. 11.(화)	8. 14.(월) ~ 8. 25.(금)	9. 5.(화)
제2회 임용시험	7. 17.(월) ~ 7. 21.(금) [취소일 : 7. 24.(월) 18:00까지]	필기시험	10. 6.(금)	10. 28.(토)	11. 15.(수)
		면접시험	11. 15.(수)	12. 7.(목) ~ 12. 8.(금)	12. 18.(월)

* 시험 일정은 시험 운영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함

4 응시원서 제출 (인터넷 제출만 가능)

가. 제출방법 및 응시수수료

- 1) 제출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제출
※ 자세한 방법은 응시원서 제출 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제출 방법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고객센터로 문의(1522-0660)
- 2) 제출시간 : 응시원서 제출기간 내 24시간 [단, 제출 시작일은 09:00부터, 제출 마감일은 18:00까지]
- 3) 응시수수료 : 8·9급 5,000원, 7급·연구·지도사 7,000원

<참고사항 >

- 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이 추가 소요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나. 원서제출 시 유의사항

- 1)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1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제출 가능)
- 2) 부산광역시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를 중복 또는 복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3)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응시자격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최종 제출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 함
- 4) 응시원서 제출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제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결제완료 이후 응시 직렬(직류)을 변경할 때에는 결제 취소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함
- 5) '취소기간' 내 원서제출 취소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6) 원서제출 시 등록하는 사진은 시험 시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본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 사진파일은 규격 3.5cm × 4.5cm, 해상도 100dpi 이상
- 모자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등은 사용이 불가하며, 본인사진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

- 7) 응시표는 필기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출력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합니다.(분실 시 재출력 가능)
- 8) 장애인·임신부는 원서제출 시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제공 내용, 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은 [붙임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에서 확인

5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7급~9급 공개경쟁에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선발(모집) 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

※ 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다. 결정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 ※ 해당 성(性)의 응시자가 추가 합격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6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소지자 (직렬별 적용가산점 [붙임1] 확인)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1개만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나~마'에서 확인

나. 취업지원 대상자 ▶ 해당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대 상 자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 ②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2) 가산점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 득점에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참고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가점비율 등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본인이 사전 확인

다. 의사상자 등 ▶ 해당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대 상 자

- 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 ②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2) 가산점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 득점에 각 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참고사항>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 확인

라. 자격증 소지자 ▶ 해당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자격증에 한함

1) 가산방법

- 가산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 득점에 각 과목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은 제외함]

2) 가산비율

① 행정직군

직렬(직류)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직(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무직(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직(사회복지)	변호사	

②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구 분	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참고사항>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붙임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서 확인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 폐지된 자격증이나,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해당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1)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일까지 가산점 적용에 관한 자격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2) 가산점 등록기간 :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

구 분	등록기간	등록방법
제1회 임용시험	2023. 6. 10.(토) ~ 2023. 6.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local.gosi.go.kr)
제2회 임용시험	2023. 10. 28.(토) ~ 2023. 10. 30.(월)까지	

- 가산점 등록사항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 가산비율 등
-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3) 취업지원 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7 (7급 공채)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상세내용은 [붙임4] 확인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2023. 10. 27.)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1)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 분	토플(TOEFL)		토익(TOEIC)	텡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PBT	IBT		185.12 이전 시험	185.12 이후 시험		
기준점수(일반)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340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기준점수(청각장애)	352점 이상	-	350점이상	375점 이상	204점 이상	-	375점 이상

- 2) 인정범위 : 2018. 1. 1. 이후 국내에서 응시한 시험과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취득하여 확인이 가능한 시험만 인정합니다.
※ 외국 응시시험 : 토플<모든국가>, 토익<일본>, 지텔프<미국>
- 3) 사전등록 :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시험(토플, 토익, 텡스, 지텔프) 성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등록하여, 성적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2023. 10. 27.)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1) 기준점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2) 인정범위 :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본 시험계획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gosi.busan.go.kr)에 공고합니다.
 -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시험장소 안내,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gosi.busan.go.kr)에서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문자 안내 등 별도의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 다.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하는 과목은 공개하고, 부산광역시가 자체 출제하는 과목은 비공개이며 문제지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 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바. 응시자는 자격증 정보 및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저장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사. 기술계 고졸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가 대학 재학이나 대학 졸업 학력(학점은행제 등 포함)이 드러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아. 안정적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경력경쟁 임용 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및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합니다.
- 자.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 일반모집 직렬(직류)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 최종등급 및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달라지는 주요시험제도 안내

< 2023년부터 시행 >

- (기술계 고졸 경력경쟁) 응시자격 제한
 - ⦿ (현행)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변경)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단,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시행예정일(2023. 12. 8.)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만 응시 가능**)
- (운전직 9급) 시험방법 변경(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변경) ▶ 세부 변경 내역 [붙임3]에서 확인
 - ⦿ **[응시자격]** (현행) 1종 대형운전면허 → (변경) **대형운전면허 + 실무경력(1년 이상)**
 - * 실무경력 -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 **[시험과목]** (현행) 3과목 → (변경) **2과목**
 - * (현행) 3과목(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변경) 2과목(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방재안전직)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
 - ⦿ 대상직렬(직류) : 방재안전직렬(방재안전) ▶ (추가자격증)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 (7급 공채) 시험과목 '한국사' 대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삭제**
 - ⦿ (현행) 인정기간 5년 → (변경) **삭제**

< 2024년부터 시행 >

-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 ⦿ 내용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현행) **20세 이상** → (변경) **18세 이상**
- '전산직렬' 특수직급에서 제외(응시필요자격요건 삭제)
 - ⦿ (현행) '전산직렬' 특수직급, 응시필요자격요건(자격증) →
 - (변경) 특수직급 제외, '응시필요자격요건(자격증)'을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자격증'으로 전환

- ▶ **공고문 열람 게시판**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gosi.busan.go.kr),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 ▶ **임용시험 공고내용 문의** : 부산광역시 바로콜센터 (120),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051-888-1972, 1974, 1971)
- ▶ **원서제출 및 시스템(로그인, 결제 등) 이용방법 문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 붙임 1. 직렬(직류)별 가산 대상 자격증 안내 1부.
 2.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1부.
 3. 시험제도 변경사항 안내 1부.
 4. [7급 공개경쟁] 영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및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범위 안내 1부.
 5. [운전9급]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서식) 1부.
 6. [연구직·지도직] 관련(계통)학(위) 증명서 및 추천서(서식) 각 1부.
 7. 증빙서류 제출 봉투표지 1부. 끝.

※ 붙임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gosi.busan.go.kr)에서 본 공고문의 첨부파일 확인